

# 2012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 및 일본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sup>1)</sup>

■ 김성웅\*

## 1. 개요

정부는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최근 한-콜롬비아 FTA 타결까지 FTA 추진 로드맵에 의거하여 동시다발적이고, 전략적인 FTA 체결을 현실화하고 있다.<sup>2)</sup> 현재까지 10건(47개국)의 FTA를 체결 및 타결하고, 8건(13개국)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기타 7건(14개국)의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sup>3)</sup> 중국과는 올해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열린 4차 협상까지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본과는 2003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436, woongnice@kisdi.re.kr

- 1) 중국 부분은 2008년 필자의 '2008 미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의 업데이트에 초점을 맞춤
- 2) 정부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2008년 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 3)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서비스/투자), 미국, 인도,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와는 타결됨. 캐나다, 멕시코, GCC,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협상 중. 일본, MERCOSUR, 이스라엘,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등과는 여건 조성 중임.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년에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04년 6차를 끝으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3국은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민간공동연구에 착수한 지 9년 만에 다자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sup>4)</sup> 중국과의 FTA와 한중일 3국 간의 FTA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아시아의 FTA 네트워크, 즉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블럭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sup>5)</sup>

이에 향후 협상에 있어 중국 및 일본과 상호간의 법, 제도 등에 대한 문제 및 개선요구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sup>6)</sup>는 무역상대국의 방송통신 분야 무역상(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세부적으로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참고자료의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장벽보고서 중 방송통신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관련된 무역장벽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하였다.

- 4) 2012년 11월 20일 한중일 3국 통상장관들이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놈펜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함. 한편 정상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선언함(프놈펜 선언). 한국경제TV(2012. 11. 21), "한중일 FTA 협상개시 '득과 실'".
- 5) 한중일 3국 간의 FTA로 인구 15억 명, 국내총생산 GDP 합계 14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와 유럽연합 EU를 잇는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의 설립을 의미. 우리나라는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최대 163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협정 발효 후 경제효과를 5년과 10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실질 최대 국내총생산은 5년간 0.44%, 96억 2천5백만 달러가 증가하고, 10년이 지나면 1.45%, 163억 4천7백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한국정책방송》(2012. 11. 20), "한중일 FTA...세계 3위 거대 경제권 탄생".
- 6) NTE 보고서는 美 USTR(무역대표부)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의거하여 주요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수입정책, 무역 및 투자관행 등을 분석해온 보고서로서, 금년에는 총 61개 주요 교역대상국 및 경제권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12년 3월 30일에 발표된 내용임. USTR 홈페이지.

## 2. 2012 미무역장벽보고서 중국의 방송통신 분야 주요 내용

### (1) 통신 분야

#### 1) 수입 장벽: 통신장비 국내보조

통신장비와 관련하여, 중국 공업정보화부<sup>7)</sup>(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수입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1998년에 제정된 내부규정, 즉 통신사업자들에게 국내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09년 2월 국무원은 국내장비의 구입을 장려하고, 우대정책 및 투자 증대를 통해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을 촉진시키는 공업정보화부의 부양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3G 서비스 및 디지털 TV 등의 신규 기술 채택에 투자를 집중하고, 전기통신 상품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규정, 즉 정보보호등급보호관리방법<sup>8)</sup>에 따르면 사회질서, 공공이익,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정보보호기술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USTR은 동 규정의 이행규칙이 상업 분야의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에 확대 적용되면, 중국 내 외국 정보보호기술 공급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2) 서비스분야 시장접근

WTO 가입 후 2007년에 발효된 시장접근 양허 및 WTO 참조문서상의 경쟁적인 규제 원칙의 수용에 따라 그동안 통신규제기관 및 사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던 공업정보화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보장해야하는 의무

7) (구)신식산업부로서, 2008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에 따라 공업부를 통합하여 공업정보화부로 개편됨.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8) Multi-Level Protection Scheme(MLPS)은 공안부 및 공업정보화부가 2007년 입안한 정보보호 분야 법규

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류, 외국인 투자, 경쟁, 허가요건, 표준, 법규 등에 있어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가 통신시장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통신사업자의 최소자본금요건이 시장진입하기에는 아직 높은 수준이며,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정책적으로 지원 및 우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동향에 따라 2012년 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비해 온라인 서비스, 즉 인터넷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규제 및 제한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증가하였다. 인터넷 규제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인터넷 검열체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인터넷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통신 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 대해 USTR이 제기한 구체적인 지적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규제기관 독립성	- 공식적으로는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으나, 여전히 인사, 조직, 주파수 할당 및 표준에 대한 사업자의 결정에 공업정보화부가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음
투자 및 서비스 분류	- 투자승인절차가 불투명하고 지연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환경 및 면허 부여 체제가 아님 - 2008년 기본통신사업자의 최소자본금요건을 10억 위안(인민폐)으로 낮췄으나, 아직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용회선, 재판매 등 신규설비 구축이 필요 없는 분야의 상업적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이 아님 - 개인네트워크서비스(IP-VPN) 분류 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 서비스로, 국제적 공급의 경우 기본통신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자본요건이 높아지게 되어 외국사업자의 부담이 가중
허가	○ 기본통신 - 지난 10여년간 신규사업자 진입이 전무하고, 국외사업자는 오직 면허가 있는 중국의 기존 국영기업과의 합작만이 가능 - 신규 진입자에 대한 경제필요성심사로 인해 시장접근이 더욱 어려움 -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케이블모뎀, VoIP, 모바일 WiFi 등의 신규서비스나 기술의 인가에 인색 ○ 부가통신 - 20,000개 이상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중에 외국기업은 2009년 12월 기준 19개에 불과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표준	- 기술중립성과 관련하여 2009년에 3G 면허를 허가하면서 표준으로 TD-SCDMA, W-CDMA, CDMA 2000 EVDO 등의 기술을 표준으로 허용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TD-SCDMA 표준 지원 및 선호 정책 <sup>9)</sup> 으로 인해 공정경쟁이 저하되고 4G 등 발전된 기술 개발의 혁신 노력이 축소
융합	- 통신 분야 융합과 관련 동 시장 내 외국사업자의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요구
온라인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인터넷 검열 체제를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중국에 들어오는 인터넷 트래픽을 일상적으로 검열</li> <li>- 2002년 대부분의 서양 뉴스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해제했으나, 이후에도 외국 뉴스와 웹사이트들이 정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접속이 제한됨(2008년 올림픽으로 인해 검열이 한동안 해제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Control 2.0' 이니셔티브 및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를 설정한다는 미명하에 통제를 재개)</li> </ul> </li> <li>○ 인터넷 검열에 대한 변경사항은 사전 경고나 공식적인 설명 없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적으로는 법에 명시된 공익 문제를 위해서이나 정부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된 검색 단어나 웹사이트를 매우 발표하여, 항소 방법이 없는 인터넷 운용 서비스들은 법규 준수와 자의적인 제한 사이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됨</li> </ul> </li> <li>○ 인터넷 규제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한은 2000년 이후 증가한 다수의 조치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미공개</li> <li>- 최소 12개 정부기관이 인터넷 접근과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뉴스의 주체범위 및 뉴스 보도권한을 제한하고 있음</li> <li>※ 이는 전통적인 뉴스 보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 보도매체가 아닌 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해 고객, 회원, 본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제공할 경우) 평범한 비즈니스 리포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됨</li> </ul> </li> </ul>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인터넷 보급률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관할권 통제, 웹페이지 등록요건 및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콘텐츠 규제 등 인터넷 사용 제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통제, 상업적 웹사이트에 대한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발전에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li> <li>- 정부가 부과하는 인터넷 접속료의 높은 가격, 느린 접속 속도, 도농 간 보급률 격차 등 기술적인 문제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li> <li>- 신용카드 지불시스템의 부재,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안전한 온라인 지불시스템 부재 등은 온라인 거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li> <li>-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적합한 법규체계가 아직 미비한 바, 온라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자계약의 유용성을 인식한 법규가 아직 갖춰지지 못함</li> </ul>

9) TD-SCDMA 기술에 기반을 둔 상품을 정부조달 상품으로 우대하는 규정. '3세대 통신망 구축 개발을 위한 의견'.

## (2) 방송 분야

중국정부는 외국 시청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 및 강화함으로써 국영 시청각 서비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영화, TV, 음악의 수입 및 배급과 쿼터에 대한 제한 수준이 높으며, 방송사 설립 및 운영 금지, 엄격한 투자 요건, 그리고 검열 규제의 비일관성과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외국 공급자의 시장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허가된 비디오 상품이 없기 때문에 불법 해적판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암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USTR이 지적 및 요구한 방송 분야의 구체적 장벽은 다음과 같다.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영화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수입회사 및 두 개의 유통회사만을 허가하여 사실상 광전총국이 모두 관리하는 독점 형태가 됨</li> <li>- 위 회사는 영화 개봉과 관련, 중국 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부과한 계약에 따라 수입할 영화, 개봉시기, 박스오피스 수입 배분요건 등을 보고해야 함</li> <li>- 외국영화 스크린쿼터는 총 영화중 1/3로 제한(2001년 국무원 규정)<sup>10)</sup></li> </ul>
영화개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영화의 개봉시기와 관련하여 자국영화의 보호를 위해 신작 외국영화를 같은 시기에 개봉할 수 없도록 ‘개봉금지’ 기간<sup>11)</sup>을 역사적으로 정해놓고 있음</li> <li>- 개봉금지 기간 규정으로 인해 외국영화 해적판 CD, 인터넷 다운로드 등 불법적인 현상들이 증가함</li> </ul>
TV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TV드라마, 영화 프로그램은 총 방영시간의 25%로 제한하고, 기타 외국 프로그램은 15%로 제한하며,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외국 프로그램은 7시~10시(프라임 시간대)에 방영금지(2004년 국외 TV프로그램의 수입 및 방송에 관한 행정조치)<sup>12)</sup></li> <li>- 유료 TV채널에서의 총 방영시간 중 외국 프로그램은 최대 30%로 제한(2003년 디지털 케이블TV 유료채널에 관한 임시조치)<sup>13)</sup></li> </ul>

10) Regulations for the Administration of Films Decree No. 342, 제44조.

11) black-out periods

12)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Import and Broadcast of Extraterritorial Television Programs No. 42, (2004. 10. 23)

13) Interim Regulation on Digital Cable TV Pay Channels(2003. 11. 14)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음성 녹음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음악 공급회사의 외국인 소유 금지 및 음성녹음 온라인 유통 회사의 중국인 소유 의무(문화부, 인터넷음악의 개발 및 규제에 관한 의견)</li> <li>- 2007년 공업신정보화부 및 광전총국은 공동으로 오디오/비디오 유통 서비스를 국영기업으로 제한</li> <li>- 외국 음성녹음은 검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통이 승인된 후에도 온라인 유통은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 등 중국 국내 음성녹음에 요구되지 않는 요건이 존재</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프로덕션과 관련, 합작 또는 협력기업은 최소자본요건 275,000달러, 외국 자본은 49%로 제한</li> <li>- 합작 또는 협력회사에 2/3을 중국 프로그램으로 편성 의무(2005년 광전총국 회보)</li> <li>- 민간 자본의 뉴스기관, 신문, 출판사, 라디오 및 TV 방송국 설립 및 운영 금지, 그리고 라디오 및 TV 신호 방송 중계국, 위성 및 백본망도 금지(2005년 국무원 지침)</li> </ul>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2007년 4월에 도서, 신문, 저널, 영화, 비디오 및 음성녹음 등 저작권이 집약된 상품에 대한 수입 및 유통 제한과 관련하여 WTO에 제소한 바 있다. 2009년 8월에 WTO 패널은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중국은 항소했으나 2009년 12월에 WTO 항소기구는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중국은 판결사항을 2011년 3월까지 이행하기로 동의하였다.

### 3. 2012 미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통신 분야 주요 내용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신규 기술과 사업 모델에 대해 균등한 시장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융합 서비스와 인터넷 구동 서비스(internet-enabled services)에 적합한 규제의 틀을 보장하고,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경쟁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규칙 제정에 있어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적 의사 결정시 공정함을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2012년 1월 일본은 ICT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무역 원칙에 대해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통신 서비스 주요 분야에 대해 우려사항 및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 대해 USTR이 제기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유선 상호접속	- 2011년 3월 총무성(MIC)은 2012년까지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에 기반을 둔 NTT 동일본과 서일본의 상호접속 요금을 승인하였고, 2010년 6월 NTT 동일본과 서일본이 운영하는 차세대통신망(NGN)의 이더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접속 요금을 승인하였으나,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상호접속 사업자들은 더 많은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지배적 사업자 규제	- 유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NTT가 FTTH 시장 지배력(2011년 9월 기준 75% 점유율)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광섬유 기반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것을 우려 - NTT가 유선 서비스를 NTT DOCOMO의 모바일 서비스와 번들로 엮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에 대해 우려(이는 구조적으로 이들 회사를 분리한 이유와 상반됨) - NTT의 전반적인 법적 구조에 대해 진행 중인 검토가 융합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일본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
보편적 서비스	- 현재 NTT 동일본이 상호접속 수익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NTT 서일본에 대한 교차보조에 대해(보편적 서비스 기금과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 -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하에서 가입자의 기존 무선전화와 음질 및 신뢰도 등에서 동등한 광섬유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가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모바일 접속	- 모바일 상호접속 요금은 국제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유선 요금과 비교했을 때 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 MIC가 상호접속표 계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지배적 모바일 사업자인 NTT DOCOMO는 다른 무선 사업자에게 대한 접속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NTT DOCOMO에 비해 다른 무선 사업자들의 접속 요금은 여전히 높음 - 모바일 분야에 신규 사업자들이 출현하면서 MIC가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 시의 이점을 고려할 것을 권고
신규 무선 라이선스	- 2010년 9월 MIC는 2개 사업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주파수 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 단 하나만을 허가하였는데, 지원서 평가 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주겠다는 목표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 존재 - 주파수의 희소성과 신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미국 정부는 MIC가 상업적 주파수, 특히 2011년 7월 디지털 TV 전환의 결과로 활용 가능하게 된 주파수에 대해 기술중립적이고,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할당 가능한 경매제 등의 대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 ※ 2011년 12월 MIC는 2015년까지 상업적 주파수 배정에 있어 경매제를 감안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분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정보기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컴퓨팅: 국내 및 국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 간의 비차별 원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규칙이 도입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철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산업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li> <li>- 헬스 IT: 정보 처리의 상호운용성, 기술중립성, 국제적 조화,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 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헬스 I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 국제 기준에 기반하고 기술중립성을 촉진하며 환자들이 보건 기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 IT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li> <li>- 프라이버시: 부처 간에 분리되고 일관성 없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므로, 정책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의 일관된 도입을 통해 중앙 정부의 프라이버시법을 보다 균일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 개발됨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공유 촉진, 투명성 보장, 폭넓은 협의를 통해 프라이버시법의 조항과 적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li> <li>- IT 및 전자상거래 정책 입안: IT 및 전자상거래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투명성 부족은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미국 회사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의 모든 단계에 있어 산업 자문을 구함으로써 정책 입안 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li> </ul>

## 4. 결 어

2012년 3월에 발표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중국 및 일본에게 방송통신 분야 국내법, 제도, 관행상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이전에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고, 2012년에 새롭게 지적되어 그 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통신장비의 수입 시 국내 상품 사용 우대, 반독점법의 집행권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미비, 엄격한 외국인 투자 요건 및 허가 요건, 자국의 기술표준 우대, 엄격하고 복잡한 인터넷 검열체계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한 영화 및 TV 쿼터 수준, 투자 요건 등의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였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접속 요금 수준,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경쟁 보장, 적절한 주파수 허가의 필요성, 정보기술 관련 문제 등 통신 분

야의 문제점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방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고 간주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지적을 통해 실제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보다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른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 및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추진될 예정인 한중일 FTA와 관련한 전략적인 협상안 준비 및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일본은 방송통신 분야의 국내 시장, 규제제도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협상 진행 시 접근해야 할 전략적 방법 또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NTE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협상 의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실익을 잃지 않도록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성웅 (2008), “미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중국의 방송통신시장 무역장벽”, 《방송통신정책》, 제20권17호 통권447호.
- 외교부 (2003. 8), “FTA 추진 로드맵”.
- \_\_\_\_\_ (2007. 4), “전략적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 한국경제TV (2012. 11. 21), “한중일 FTA 협상개시 ‘득과 실’”.
- 《한국정책방송》 (2012. 11. 20), “한중일 FTA…세계 3위 거대 경제권 탄생”.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8~2012”.  
China and Japan.
- 미국 USTR, 홈페이지 (www.ustr.gov)
- 외교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 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www.miit.gov.cn)